

|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학교법인 | 교원인사위원회규정 | 문서번호   | 1-2-03(A)-0   |
|      |           | 제정일자   | 06.06.01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최근개정   | 23.09.22      |
|      |           | 주관부서   | 학교법인<br>법인사무국 |
|      |           | 홈페이지공개 | 공 개           |

학교법인웅지학원 법인사무국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(총장은 제외한다.)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01.01.>

**제2조(기능)**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1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11.19., 2023.02.08.>

1. 교원의 임용(신규임용, 재임용, 승진임용, 기간제임용 등) 제청·동의에 관한 사항.

<개정 2023.09.22.>

2.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<신설 2023.09.22.>

3.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(前)임용기간 중 제39조의2 제1항 제4호, 제5호, 제6호 및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9.22.>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2. 교수·연구·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③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하고 임용 계약서에 반영한다. <개정 2023.09.22.>

**제3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처장 등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07.01., 2015.12.23., 2023.02.08>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08>

**제4조(위원장 및 직무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15.07.01., 2023.02.08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3.09.22.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[기존 3항과 4항의 자리 이동]

- 제5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3.02.08>  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6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2.08>  
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15.12.23.>

- 제7조(간사)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09.22.>  
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3.09.22.>

- 제8조(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) ①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의결된 내용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 
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알고 있는 회의내용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 <1판-개정/시행 2006.06.01.>

이 규정은 200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13.01.01.>

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 2015.07.01.> <시행 2015.09.01.>

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4판-개정 2015.12.23.> <시행 2016.01.01.>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5판-개정 2023.02.08.> <시행 2023.02.08.>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6판-개정 2023.09.22.> <시행 2023.10.30.>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